

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에 따른 안내 말씀

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.

가구 소매업, 의료용 기구 소매업,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, 페인트·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, 안경 소매업이 2016.2.17.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되었습니다.

위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2016.7.1.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건당 거래금액(부가가치세액을 포함)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.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50%가 과태료로 부과되오니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업 종	국세청 업종코드
가구 소매업	가구 소매업(523311, 523312, 523314, 523331)
의료용 기구 소매업	의료용 기구 소매업(523120)
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	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(523352)
페인트, 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	페인트, 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(523421, 523422, 523491, 523492, 523494, 523499)
안경 소매업	안경 소매업(523541)

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 상 소매업을 등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소매업 겸업시 사업자등록 상 업종 추가)

* 도매업만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없으며 세금계산서 발급

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라며, 귀하(사)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

2016년 5월 일

세무서장 (관인생략)

안내 :

조사관,

Tel

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

- (가입방법) ① ~ ③ 중 선택(자세한 내용은 홈택스 공지사항 참조)

- ①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하시면서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.
- ② 아래 현금영수증사업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

상 호	홈페이지	연락처
(주)케이티	www.hellocash.co.kr	02)2074 - 0340
(주)엘지유플러스	taxadmin.uplus.co.kr	1544 - 7772
한국정보통신(주)	www.kicc.co.kr	1600 - 1234
퍼스트데이타코리아(유)	www.moneyon.com	1544 - 7300
(사)금융결제원	www.kftcva.or.kr	1577 - 5500
나이스정보통신(주)	taxsave.nicevan.co.kr	02)2187 - 2700

- ③ 세미래콜센터 ☎ 126 (현금영수증) ARS를 이용하여 가입

☎126→①(홈택스상담)→①번(현금영수증)→②번(상담센터 연결)→①번(한국어)→④번(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)→사업자번호(10자리)→비밀번호 설정→대표자 주민번호(13자리)→비밀번호(4자리)→①번(가맹점 가입)

- (미가입시 불이익)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 × 1% 가산세 부과

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발급 의무

- (발급방법) 신용카드단말기, 인터넷, ARS 전화 중 선택
- (발급의무 기준금액) 거래 상대방의 발급요구가 없어도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함
* 거래 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번호(010-000-1234)로 발급
- (미발급시 불이익) 미발급금액 × 50% 과태료 부과(조세법치벌법 제15조)

현금영수증가맹점 스티커 부착

- (부착의무)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점 스티커를 '계산대나 계산대 근처, 사업장 출입문 입구'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해야 함
- (미부착시 불이익) 50만원의 과태료 부과
* 스티커는 관할 세무서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.